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30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이소영 · 강득구  
김정호 · 김경만 · 김성환  
양이원영 · 서영석 · 송갑석  
윤미향 · 이원택 · 서삼석  
김승원 · 주철현 · 윤재갑  
이성만 · 양정숙 의원  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,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.

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,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·보급을 효율적이

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·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8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·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
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산형전원의 확대 지원
3. 「에너지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
4.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·홍보
5. 그 밖에 지역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③ 국가는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, “센터”를 “센터,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1조의2(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·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</u></li> <li><u>2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산형전원의 확대 지원</u></li> <li><u>3. 「에너지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</u></li> <li><u>4.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·홍보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지역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</u></li> </ol> <p><u>③ 국가는 지역재생에너지전환</u></p>

